

보안업무규정

2012. 11. 28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모든 유·무형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보안업무 처리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① 대학의 유·무형 정보자산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구성원과 대학의 필요에 의해 계약된 외부인력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②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이 필요한 대학의 모든 유·무형 정보자산과 그 부대시설을 적용범위로 한다. 단, 대학 네트워크망을 이용하는 별도법인은 자체 보안규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고 발생 시 대학의 보안업무규정을 따른다.

제3조(의무와 책임) 대학의 유·무형 정보자산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구성원과 관련 외부 인력은 대학의 보안업무규정과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에게 부여된 사용권한과 관리권한 내에서 대학의 정보자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자산”이라 함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적 정보 및 데이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리적 환경, 인적 자산과 문서, 지적 재산권, 기술 관련, 학술연구 관련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
2.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3.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서버·PC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네트워크 장치,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4. “외부인력”이라 함은 대학 소속의 구성원 이외의 모든 인력을 통칭하며, 대학의 자산 이용여부에 따라 외주용역인력, 외부 연구참여인력, 위탁매장 소속인력, 기타 외부인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보안사고”라 함은 대학의 정보자산이 무단으로 열람, 유출, 훼손, 변경 되는 사고를 말한다.
6. “위험평가”라 함은 정보자산의 중요도와 정보자산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측면에서의 취약점 수준에 따라 위험 크기를 측정하고, 위험도를 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이외의 용어는 통상적인 정의에 따른다.

제5조(보안총괄책임자) ①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는 보안총괄책임자(Chief Security Officer,

이하 “CSO”라 한다)는 부총장으로 하며 보안심사위원회의 장을 겸한다.

② CSO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보안전략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3. 보안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대학의 보안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의 보안업무 활동에 관한 사항

③ CSO는 대학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의 보안업무기구를 두며, 분임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분임보안책임자) ① 분임보안책임자로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연구보안책임자 및 정보보안책임자 등을 둔다.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각 구성단위별 신분을 대표하는 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제·개정
3.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반사항 관리 및 총괄
4. 보안심사위원회에 개인정보보호 분야 안건 심의 상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③ 연구보안책임자는 연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연구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연구보안 관련 규정의 제·개정
3. 연구보안 관련 제반사항 관리 및 총괄
4. 보안심사위원회에 연구보안 분야 안건 심의 상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④ 정보보안책임자는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정보보안 관련 규정의 제·개정
3. 정보보안 관련 제반사항 관리 및 총괄
4. 보안심사위원회에 정보보안 분야 안건 심의 상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

제7조(보안심사위원회) ① 보안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CSO 하부에 “보안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CSO를 위원장, 정보보안실무부서장을 간사로 하여 10인 내외의 보직자로 구

성하며, 위원구성은 별지 제2호와 같다.

2. 위원장을 포함한 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3. 위원회 소집은 협의 안건이 있는 실무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안건 및 협의내용을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안전략 및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보안관련 규정에 관한 주요 사항
3. 보안 위반자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안실무협의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이행과 조정 및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하여 “보안실무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협의회 구성은 각 보안업무의 실무 대표부서의 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협의회를 소집하는 보안업무 실무부서의 담당자로 한다.
2. 협의회 소집은 협의 안건이 있는 실무부서에서 공문을 통해 안건 및 협의내용을 7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보안업무 범위에 관련된 실무 사항
2. 보안예산 수립 및 집행 관련 사항
3. 보안관련 규정 사항
4. 외부 용역 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물리적 보안 등의 운영계획에 대한 협의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제반 사항

제9조(보안업무실무부서) ① 보안업무관련 실무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단위조직의 보안활동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보안업무실무부서를 둔다.

② 보안업무실무부서는 분임보안책임자 산하에 두며, 업무의 독립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업무실무부서는 해당 보안 분야에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보안업무 계획 이행 및 예산 수립
2. 보안업무 관련규정의 관리
3. 보안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위협평가 및 보안감사 활동
5. 보안교육 및 훈련 집행
6. 대외 보안업무의 실무창구

7. 기타 보안관련 제반사항에 관한 사항

제10조(규정의 수립 및 시행) 보안업무규정의 시행과 보안업무 활동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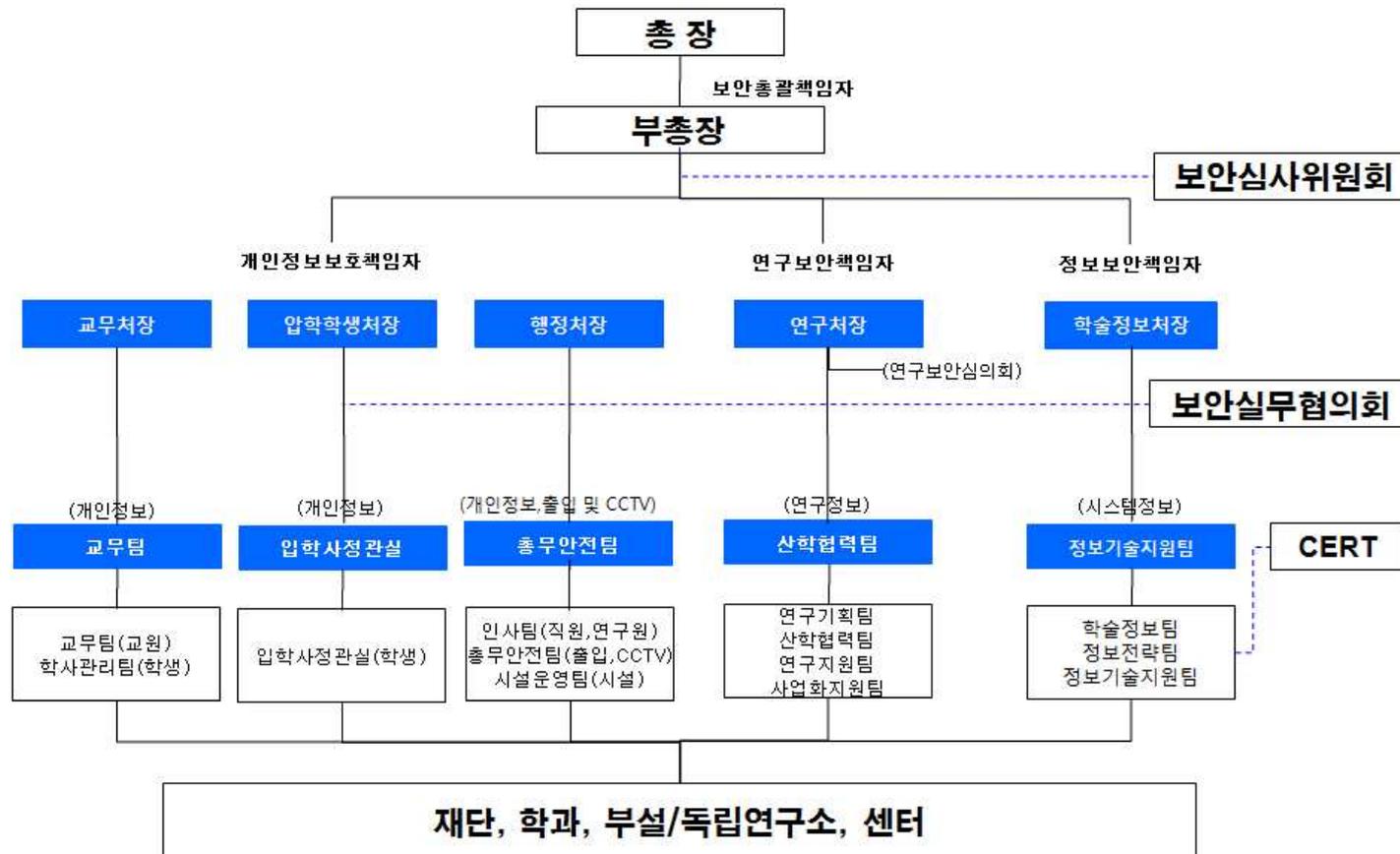
제11조(제재절차) 대학의 정보자산이 내·외부의 무단사용자에 의해 침해를 받는 경우 보안을 위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의 제정 시행일 이전의 “정보보호규정”은 이 규정으로 통합됨으로 제정일 기준으로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업무기구표

대학보안업무기구표



(별지 제2호 서식) 보안심사위원회

보안심사위원회

NO	구 분	직 위	비 고
1	위원장	부총장	
2	위 원	기획처장	
3	위 원	교무처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4	위 원	입학학생처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5	위 원	연구처장	연구보안책임자
6	위 원	학술정보처장	정보보안책임자
7	위 원	대외협력처장	
8	위 원	행정처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9	간 사	보안업무실무부서장	